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연구

- 법률, 예산, 조직을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유 동 빈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연구

- 법률, 예산, 조직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기 한

이 논문을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유 동 빈

유동빈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권 순 용 (인)

부 위 원 장 임 충 훈 (인)

위 원 김 기 한 (인)

국 문 초 록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연구 - 법률, 예산, 조직을 중심으로 -

유 동 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본 논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전세계적으로 약 1,7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스포츠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일본은 스포츠산업을 국가의 신(新)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이 스포츠산업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갈지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국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기사,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스포츠산업정책 관련 정보 중 정부전략, 법률, 예산, 조직을 비교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스포츠산업 내적으로는 스포츠의 콘텐츠를 개선하고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타 분야와의 융복

합을 통한 신(新)시장 창출을 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둘째, 우리나라는 엘리트, 생활, 스포츠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은 ‘스포츠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그 중에서 스포츠산업 또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부족한 정책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한국, 일본, 스포츠산업, 정책, 법률, 예산, 조직
학 번: 2015-23072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한국의 스포츠산업 현황	4
제 2 절 정부 정책과 스포츠산업	9
제 3 절 체육정책 분야 선행연구	11
제 3 장 연구의 방법	15
제 1 절 비교분석	15
제 2 절 비교국가 선정	17
제 3 절 비교분석 기준	20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	27
제 4 장 연구결과	28

제 1 절 한국의 스포츠산업정책	28
1.1 정부전략	28
1.2 법률	30
1.3 예산	40
1.4 조직	46
1.5 추진방향	47
제 2 절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51
2.1 정부전략	51
2.2 법률	59
2.3 예산	64
2.4 조직	66
2.5 추진방향	68
제 3 절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정리	77
제 5 장 논의 및 제언	75
제 1 절 논의	75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76
참고문헌	78

표 목차

표 1. 국내 체육정책 관련 연구	13
표 2. 문화분야 재정투자 추이	23
표 3. 체육 분야 투자계획	23
표 4. 한국 체육 분야 예산 중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한 배분율	44
표 5. 스포츠기본계획 제1기와 제2기 목표의 비교	54
표 6. 일본 스포츠시장 규모 확대 계획	57
표 7. 스포츠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 신구대조표	63
표 8.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정리	74

그림 목차

그림 1. 2012~2015년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	5
그림 2. 2012~2015년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	5
그림 3. 2012~2015년 스포츠산업 매출액	6
그림 4. 2012~2015년 스포츠산업 영역이익	7
그림 5. 한·일 노령인구 비율 추이	18
그림 6. 연구 분석의 틀	21
그림 7. 일본의 스포츠예산 추이	64
그림 8. 콤팩트한 도시형성과 지역 발전 계획	6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이 시대의 스포츠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주장에 그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 환경이 변하고 이에 대중이 가지고 있었던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 또한, 함께 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단순히 건강증진을 위한 수단 또는 취미, 오락 등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혹은 건전한 목적으로 체육활동을 즐겼다(전용구, 1997).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단순한 역할을 넘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간의 교류와 화합,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범세계적 통합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체육을 하나의 큰 범주로 간주하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신흥 스포츠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계속 유지하고 스포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선진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을 비롯하여 여러 움직임에 대해 충분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스포츠기본법」을 2011년 6월에 제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스포츠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2020 동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표 하에 기존에 문부과학성 소속이었던 스포츠국을 스포츠청으로 승격시켜 이전보다 세분화되고 집중적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등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독일의 경우에도 2006년 독일 체육회와 올림픽 위원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독일 올림픽스포츠 연맹이 모든 경기 단체들의 상위단체로서 독일 스포츠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 올림픽스포츠 위원회는 엘리트체육 발전에 있어서 청소년 스포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소년 스포츠 계획 2020’을 만들어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분야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수립한 ‘스포츠 비전 2018’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하며,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과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목표를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과 같이 엘리트와 생활 스포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스포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정부뿐만 아니라 체육계에서도 세계 체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체육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 체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체육발전방안을 강구함과 더불어 장기적인 체육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한국체육과학연구원, 1998).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스포츠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참고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고자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우리나라 체육계는 최근에 그 간 양분되어온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의 대표기관이 통합을 이루었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향후 스포츠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선진국 중 하나인 일본과 한국의 스포츠 정책, 그 중에서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원으로 만들고자하는 스포츠산업정책을 고찰하고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스포츠산업정책이라는 범주 안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어떠한 목표나 방향을 잡고 그들만의 정책을 펼쳐왔는지 스포츠산업 관련 법률과 예산, 그리고 관련 부서의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스포츠산업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위의 세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파악해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스포츠산업 정책을 펼쳐 나가야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정책, 행정체제, 국가 예산을 이용한 사업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은 물론, 정책이나 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해외의 스포츠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최근의 동향이나 추세를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임우택(1998)에 의하면 비교체육·스포츠연구는 2개 이상의 지역, 사회, 문화,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유의점, 차이점을 조사할 목적으로 가장 현저히 구별되는 특징과 발달과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마다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차이 등으로 인해서 각 나라가 스포츠 혹은 체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또한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다(임우택, 1998). 스포츠현상에 관한 국가 간의 비교연구는 외국의 스포츠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자국의 스포츠시스템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외국의 스포츠시스템을 참고로 자국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 또는 개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서로 비슷한 정책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정책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Dolowitz & Marsh, 2000).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한국의 스포츠산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12월에 발간한 ‘2015 스포츠산업백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현 주소를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43조 원의 스포츠산업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그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3배인 125조 원을 기록하였고 중국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는 221조 원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569조 원을 기록하며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산업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2015년 기준으로 1,713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의 거의 절반이 되는 수준임을 알 수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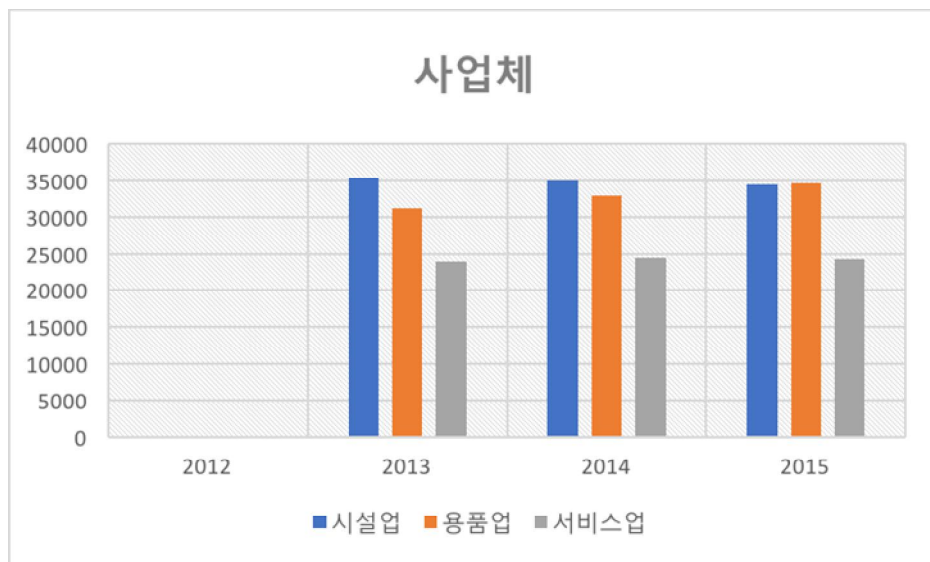


그림 1. 2012~2015년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a)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규모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2015년 기준으로 9만 3천개가 넘는 사업체에서 약 29만 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2013년에 약 40조 원에서 2015년에는 약 43조 원의 산업매출을 기록하였다. 스포츠과학 기술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R&D 지원은 2013년 약 69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 2015년에는 약 8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정부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용자의 시행금액은 체육용구 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 서비스업체 모두를 합쳐 2013년 기준 약 56억 원에서 2015년 기준 약 13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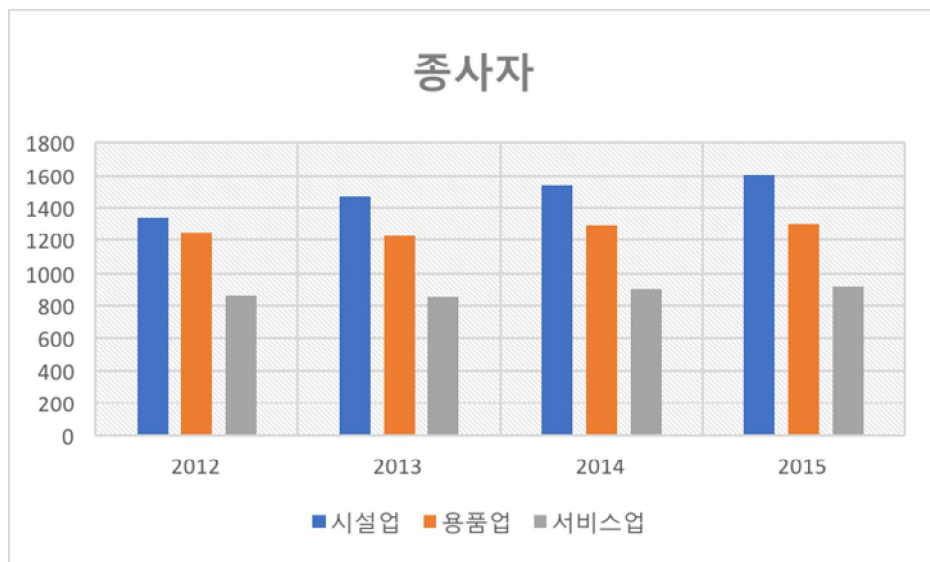


그림 2. 2012~2015년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a)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대로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스포츠 시설업은 2013년 35,314개였던 사업체 수가 2015년에는 소폭 감소한 34,450개로 파악되었으며 약 16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스포츠 시설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 시설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2014년도의 15조 950억 원에서 2015년에는 16조 2170억 원으로 7.4%정도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은 2014년 1조 2280억 원에서 2015년에는 약 1천억

원 감소한 1조 1260억 원을 기록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스포츠 용품업의 경우에는, 2013년에 31,178개였던 사업체 수가 2015년에는 34,559개로 증가하였고 총 13만 명이 스포츠 용품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에 31조 376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4% 증가한 32조 617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013년도의 3조 8990억 원보다 감소한 3조 4210억 원을 기록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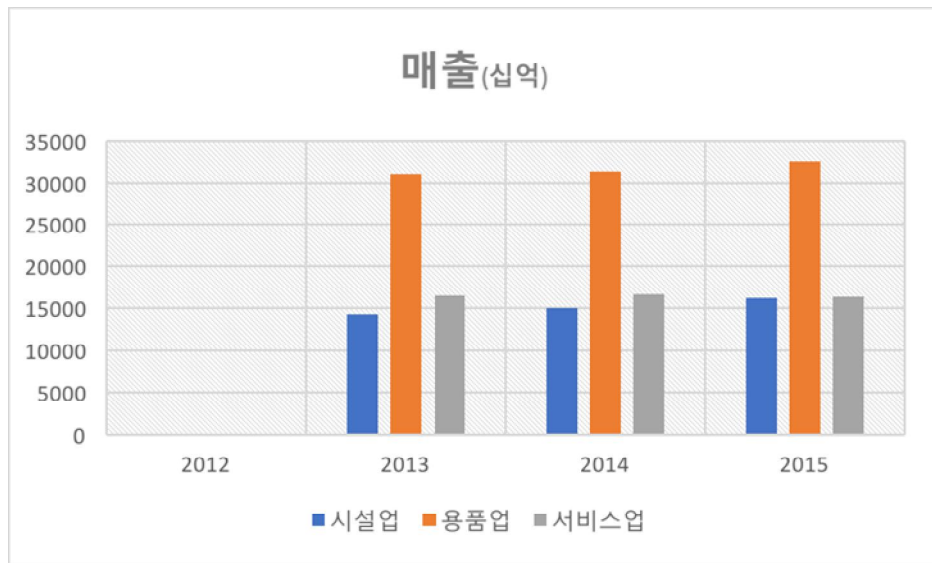


그림 3. 2012~2015년 스포츠산업 매출액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a)

2002 한·일 월드컵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2018년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스포츠산업이 진일보 하기위해 또다른 변화를 맞이해야하는 입장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15 스포츠산업백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이 맞이한 이슈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에 새롭게 제정된 「스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약 9년 만인 2016년 2월에 전면 개정되었다. 정부는 스포츠산업 시장이 성장할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일자리창출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의 신(新)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스포츠산업을 신(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더욱 확고히 하기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고 그 이유를 밝힌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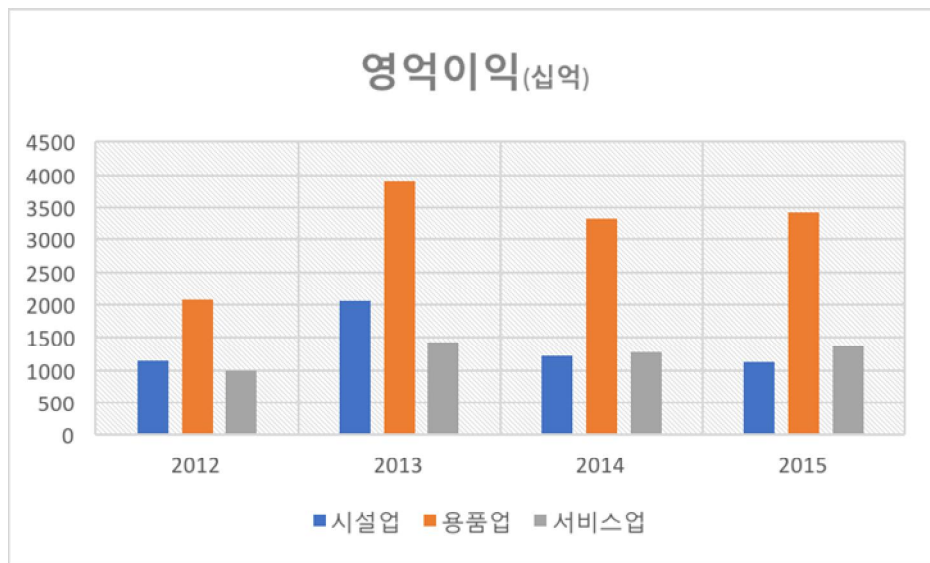


그림 4. 2012~2015년 스포츠산업 영역이익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a)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프로구단은 수익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기장을 장기임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구단이 직접 낙후된 경기장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도민구단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2년부터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스포츠산업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스포츠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활동과 일자리 창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을 개선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제 2 절 정부 정책과 스포츠산업

한국의 산업은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반세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산업발전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산업발전의 모범사례로 여겨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는 세계 산업이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으로의 변천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산업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2008년에 지역별 선도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고, 2010년부터는 매년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수립하여 각 광역경제권별로 선도 산업과 그에 따른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세계 산업에서 편의성, 다양성, 오락성 등 소비자의 니즈(needs)가 복합화 되면서 각종 산업의 융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 2011년에 제정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정부 차원에서의 중장기 종합계획인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 각 부처마다 세부적인 실천계획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1세기 세계경제를 ‘융합혁명의 시대’로 판단하고 각종 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에만 머물지 않고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발전하면서 세계경제의 급속한 패러다임 변화의 흐름에 맞추고, 더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각종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案)’을 제시하여 산업발전 방향의 큰 틀을 마련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소기업청, 2012).

위와 같이 정부는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국내 산업의 발전 방안을 내놓았고 스포츠산업도 그 정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스포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1,713조 원을 기록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약 569조 원이며 일본은 2012년 기준으로 약 125조 원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43조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a).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더불어서, 다양한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발전과 융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에 스포츠산업은 융·복합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체력측정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운동처방과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Medical Fitness Program’을 추진 하고자하였다. 이것은 IT기술과의 융합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진단과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운동처방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물론, IT기반의 체력평가 및 운동 강습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스포테인먼트 콘텐츠’를 새로이 개발하여 동작인식, 3D, 증강현실 기술 융합을 통해 가상 스포츠에 대한 시장을 개척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써 생활 속의 스포츠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지식경제부, 2012).

제 3 절 체육정책 분야 선행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과 관련된 법률, 예산 배정, 조직 구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려고 한 연구이나, 현재까지 체육정책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체육정책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동안 한국의 체육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국내의 각 정권별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다른 나라와의 정책비교를 통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그 비교대상도 다양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체육정책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체육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와 지역 혹은 국가 단위의 체육정책 비교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체육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2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국가체제나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김종희(2004)는 역대 정권의 체육정책과 참여정부의 체육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홍태, 최경호, 김유경(2008)은 국민정부의 체육정책을 살펴보고 미래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박주한(2013)은 박근혜정부의 체육정책에 있어서 핵심추진과제를 집중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유준(1999)은 한국 체육의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행정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문정, 구자영, 김범식(2013)은 정부, 기관과 학계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 후,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이명박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체육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채재성(2009)은 체육정책 중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책을 진단하고 미래의 해결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용식(2013a, 2013b)은 체

육정책을 전문체육정책과 생활체육정책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강성일(2005)은 한국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현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김대광(2004)은 학교체육의 실태에 대해 고찰하면서 학교체육진흥정책이 발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혁출(2009)은 생활체육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사회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권연택과 빙원철(2012)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체육정책이 어떤 흐름을 거쳐서 전개되었는지를 다루었으며, 손석정(2016)은 생활체육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혹은 국가 단위의 체육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는 국가 간의 정책비교와 정치체제 혹은 정권 간의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유소영(1988)은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 미국, 서독과 사회주의 국가인 중공, 소련, 동독, 북한 간의 체육정책 특징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채광호(1990)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서독, 동독의 체육정책을 분석하고 여러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대건(1995)은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정책을 올림픽대회 메달획득 기록을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이용식(1999b)은 유럽, 북미,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체육이 발달된 국가들을 선정하여 체육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재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 체육행정조직과 재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덕천(1999)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호주 등의 생활체육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옥훈, 주동진과 김동규(2001)는 우리나라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 때 펼친 체육정책을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향후 체육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옥연(2012)은 생활체육정책은 유형화하여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국의 다양한 생활체육정책의 특성과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강서린(2012)은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 간의 체육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성(2016)은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정책을 비전, 추진배경, 가치와 역할로 나누어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두 국가가 스포츠를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다루고 있는지 스포츠정책의 함의를 알아보았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체육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와 지역 혹은 국가 단위의 체육정책 비교연구로 나눌 수 있고 크게 2가지, 국가체제나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 각 체육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지역 혹은 국가 단위의 체육정책 비교연구는 국가 간의 정책비교와 정치체제 혹은 정권 간의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연구는 김영성(201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한 연구들도 일정한 비교기준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제한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체육정책 비교분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과 일본 체육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표 2. 국내 체육정책 관련 연구

저 자	제 목
강서린(2012)	역대 정부 간 체육정책의 비교분석
강성일(2005)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고문수, 엄혁주(2014)	국내 유소년 생활체육 정책 현황 및 지원 방안
권연택, 빙원철(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체육 정책의 전개
김기범(2010)	5.16 군사정변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학교체육정책 비교
김대건(1995)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정책 비교연구
김대광(2004)	중등학교 체육정책의 발전방향
김덕천(1999)	각국의 생활체육정책 비교연구
김승영(2004)	역대 정권별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김영성(2016)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김유경(2006)	국민정부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김종희(2004)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및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한나(2009)	문민·국민·참여정부 체육정책의 특성 비교
김혁출(2009)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정책 방향
김형익(2007)	군사정권과 문민정권의 학교체육정책 비교연구
김홍태 외(2008)	국민정부 체육정책의 실제와 평가
노진대(2004)	남북한 스포츠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박중권(2009)	역대 정부의 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박주한(2013)	박근혜 정부 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손석정(2016)	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향후 전망
송명원(2015)	한국과 중국의 체육정책 법률 비교분석
신용호(2011)	국가 체육정책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의 변천과정
심규훈(2007)	제5공화국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유소영(1988)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체육진흥정책의 비교 고찰
이옥훈 외(2001)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국가주의 스포츠정책 성향 비교
이용식(1999a)	선진국의 생활체육정책 비교연구
이용식(1999b)	선진국의 체육행정조직과 재정의 비교연구
이용식(2013a)	생활체육정책의 효과성평가 연구
이용식(2013b)	전문체육정책의 효과성평가 연구
이유준(1999)	한국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조규보(2013)	직선제이후 역대 대통령의 체육정책 비교연구
조옥연(2012)	생활체육정책 유형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채광호(1990)	외국의 스포츠 행정 비교연구: 정책을 중심으로
채재성(2009)	생활체육의 정책 진단과 과제
최문정, 구자영, 김범식(2013)	박근혜 정부 생활체육정책 발전 방안

제 3 장 연구의 방법

제 1 절 비교분석

비교연구는 모든 학술 연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학문 분야에서나 진행될 수 있으며 학문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남궁근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교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비교의 단위가 문화 혹은 사회, 국가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비교연구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에 대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비교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라고 정의하였다(남궁근, 1999).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간의 비교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간의 비교연구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국가들의 지방정부 수준까지 세분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만큼이나 한 국가의 지방정부 사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차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또다른 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연구의 분석단위 다음으로는 비교연구 사례의 수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비교연구를 진행할 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연구자가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Ragin은 비교연구의 주 목적을 설명과 해석으로 정의하고 한 가지의 사례를 이용한 연구일지라도 비교연구에 해당된다고 하였다(Ragin, 1987).

비교연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정책 입안자(policy-makers)들이 다른 지역, 사회, 크기는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다른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 시스템에 대해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비교연구들을 통해 최악을 피하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들을 선별해낼 수 있다. 자

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에만 국한되어 편협적인 시각을 갖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앞서 제시한 설명들을 종합하여 남궁근(1999)은 비교정책연구를 “지방정부와 국가 등 거시적 단위에서의 채택한 정책의 실질적 내용,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 정책 채택의 배경과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정의하였다(남궁근, 1999). 본 논문에서는 분석 단위를 국가로 정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체육정책을 분석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정부 단위의 분석은 되도록 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혹은 주요 정책 담당부서가 수립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제 2 절 비교국가 선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최대유사체계로 보고 두 국가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다음에서 한국과 일본을 최대유사체계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일 관계만큼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나라도 세계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 20년 전에 일본의 한 언론인이 자국의 역사와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다’라는 책을 발간한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복잡성을 알 수가 있다.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 최근에는 독도와 동해 표기와 관련된 갈등 등 수많은 건으로 역사적 대립을 이어 왔다.

보험연구원에서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대외부문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수출업종이 일본과 대동소이하다는 점 또한, 두 나라의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제조업의 생산비중과 고용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종의 생산비중과 고용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1990년부터 보이고 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수준이 상승하면 산업구조가 1차에서 2차로, 그리고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항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상황과 유사한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둘째로, 가계의 자금잉여와 기업의 자금부족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GDP(국민총생산)대비 가계와 기업의 자금잉여/부족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하락하다가 이후에 상승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를 전후로 급상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신용카드 사태를 앞두고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형태를 보였다. 기업의 자금부족 비율도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부(-)에서 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여전히 자금 부족에 처해있지만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보험연구원, 2014).

역사,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직면한 혹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도 두 나라는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인구구성의 구조를 보면 고령화의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통계청, 2016; 厚生労働省, 2016). 오히려 시작점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율 증가율이 현재 시점에서 더 크다. 경제적인 부문에서와 유사하게 인구고령화 문제 또한 일본이 약 20~30년 정도 선행하고 있다. 단순히 고령화 추이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그와 더불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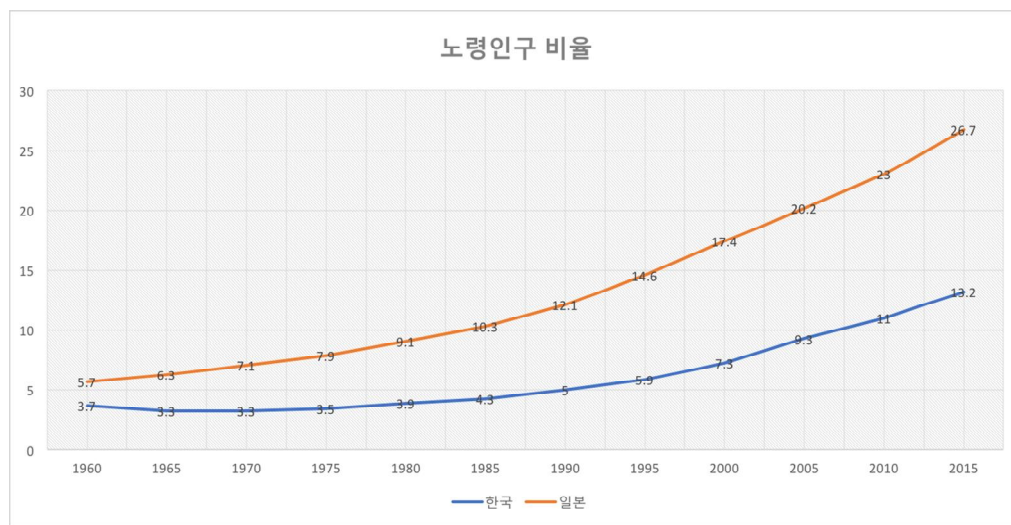


그림 5. 한·일 노령인구 비율 추이

자료출처: 통계청(2016), 厚生労働省(2016)

인구고령화에 이어 한국과 일본이 모두 직면해있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는 저(低)출산문제가 있다. 일본은 2005년에 역대 최저 출산율인 1.26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기준으로 1.42를 기록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에 출산율이 1.3으로 급감하면서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기준으로 1.21을 기록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를 감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스포츠산업정책을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많은 유사점을 지닌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최대유사체계 속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비교분석 기준

비교연구에서 변수의 선정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며 특히, 교차국가비교분석(cross national comparative analysis)을 위해서는 비교변수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공 혹은 실패 요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주 요인은 정책 기준, 목표, 집행기관의 의지, 법적 규정,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관련 이해집단의 지지여부 등이다. 이 중에서 남경희와 장유미가 제시한 정책을 비교하는 세 가지 연구 방법 중 기능적, 제도적 접근법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능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이 각각 체육정책에 있어서 재정확보의 여부와 경로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정조달이 되는지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각국의 체육정책의 토대가 된 관련 법률이 제정된 시발점이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남경희, 장유미, 2013).

위와 같은 두 가지의 비교 기준에 한국과 일본 체육정책 현실화에 기여하는 관련 담당 부서들의 조직구조 분석을 추가하여 한·일 양국의 스포츠산업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두 국가 간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상호교류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있기에 비교연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 외교, 문화뿐만 아니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등 두 분야에서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1984년 9월에 올림픽위원회간 체육교류협정을 체결을 시작으로 스포츠산업, 학계 등 분야와 종목을 막론하고 다양한 교류 활동이 이어졌다. 이러한 스포츠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잔재되어 있는 미묘한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진 두 나라가 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을 다음의 두 가지를 토대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 체육정책에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스포츠산업정책을 한국과 일본의 최근 정권이라는 특정 기간을 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임했던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총리직에 있는 아베 신조의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한 2013년¹⁾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과 일본 스포츠산업정책을 법률, 예산, 조직의 세 가지 변수를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내용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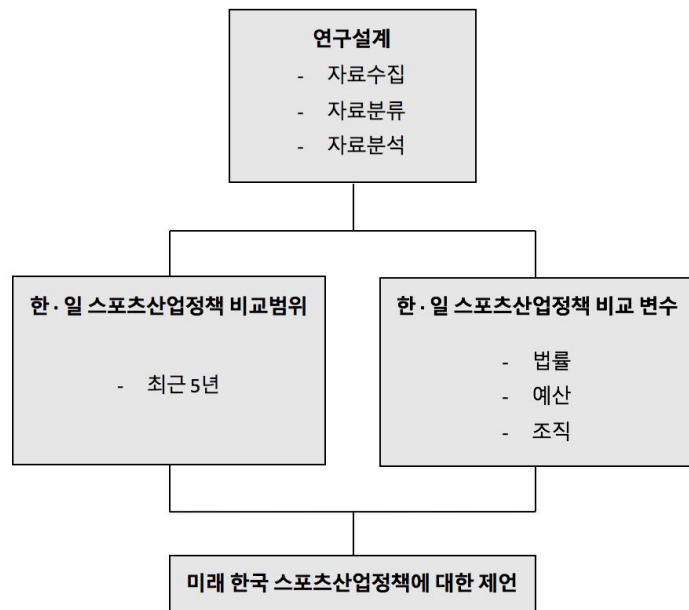


그림 6. 연구 분석의 틀

위와 같이 법률, 예산 그리고 조직구조의 세 가지를 비교변수로 설정하였고

1)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은 2012년 12월 26일에 출범하였으나 편의상 2013년부터 분석하는 것으로 정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 법률

우선,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국제 규모의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그에 맞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채재성, 김상겸, 홍선기, 2015). 특히, 스포츠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된 이후로 각종 신(新)스포츠산업이 출현하면서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성문정, 2005). 우리나라는 1962년에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적(국민체육진흥법, 1962) 하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스포츠산업 진흥법, 2007)으로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크게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의 4가지 법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최초로 제정된 지 1년도 안되어 개정되고 법 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등(전용배, 김애량, 2008)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육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체육관련 법률 비교분석을 통해 각 나라가 해당 법안을 통해서 지향하는 목적, 방향 등을 비교한 후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3.2 예산

박근혜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를 내세우며 문화·체육·예술 분야에 있어서 급진적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문화의 진흥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둔 ‘문화융성’을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 2017년에는 문화재정을 2%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기획재정부, 2013).

표 3. 문화분야 재정투자 추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분야(조 원)	4.2	4.6	5.0	5.4	6.1	9.8%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16)

또한, 정부의 재정투자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문화 분야에 2020년까지 꾸준한 투자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2016). 올해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체육 분야 투자 상황을 2020년에는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표 4. 체육 분야 투자계획(단위: 십억 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분야(체육)	1,539	1,498	1,542	1,785	1,982	6.5%

자료출처: 기획재정부(2016)

앞으로 체육 분야에 투자될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체육 분야의 재정 분배상태 혹은 지출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점차 증가되는 예산이 단순히 수치의 증가가 아닌 질적 향상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 예산이라는 변수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체육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두 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자료분석은 한국 체육 분야의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체 예산 중에서 스포츠산업에 배분되는 비율과 일본 체육 분야의 문부과학성 예산과 일본 스포츠진흥회(Japan Sport Council) 예산 중에서 스포츠산업에 배분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각국의 행정당국 미비한 자료와 비공개 경향 등에 의한 자료수집이 어려웠던 관계로 최근 5개년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적 행정일 뿐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정부에서 집행하는 일반회계 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 감독 하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이현정, 2003). 이에 한국과 일본 스포츠산업의 재원 배분실태를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3 조직

조직구조는 조직의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직구조와 관련된 연구들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조직의 성과에 관계되는 구조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김태룡, 2016). 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조직의 구조가 끊임 없이 주목 받아온 이유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이다(이창길, 최청락, 2012).

조직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해당 조직의 성향이나 분위기, 더 나아가서는 비전을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조직구조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선, 조직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김동규, 김광재와 박종구(2012)는 조직구조는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이 요구하는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동규, 김광재, 박종구, 2012). 시장변화에 따라서 전략을 수정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변화에 맞추어 조직구조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그에 맞게 적절한 조직변화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의 시행 혹은 국가적인 사건의 발생 등의 이유로 대대적인 조직구조의 개편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Lenz(1980)는 조직을 이루는 요소로 조직의 환경, 전략과 조직구조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의 신속한 구조적 변화는 실행에 옮기기 어렵지만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구조적 유연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반면, Child(1972)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조직이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같은 조직구조를 가졌더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 속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조직연구에 있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조직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의 운영 체계와 방식 그리고 구조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많은 조직에서 널리 채택되어 왔다. 조직의 구조는 해당 조직의 운영 체계와 방식을 규정하고 공식화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조직구조의 개편은 대개 조직의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진다.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조직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조직구조의 개편은 단순히 기구적 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구적 편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구조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에 속해있는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기능적으로 원활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수행기능의 배분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구조의 개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구편제와 인력, 기능의 배분이 동반되며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된다. 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놓은 연구 중에는 조직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가진 조직들이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면에서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그 수치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이창길, 최청락, 2012).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의 개편은 과도하게 조직의 구조적인 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만이 아닌 조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개편이 이루어져야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과 같이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과급제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김태룡, 2016).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조직구조와 현재 편제되어 있는 조직구조를 각각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생기는 업무성과 혹은 조직체계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조직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

비교연구에 있어서 남궁근(1999)은 특정사례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례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자료 분석, 공문서 분석, 센서스 자료 분석, 개인적 수준의 표본 자료 분석, 참여 관찰, 전문가 면접, 특정 국가의 시계열 연구, 국가의 하위단위들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 정책의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기 위하여 2차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역사적 자료 분석과 공문서 분석방법을 택하였다.

2차 자료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다른 연구자나 전문가가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 사전에 수집해놓은 자료로 연구자가 자신이 진행하는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고 및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자료는 기성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만 구하게 되면 자료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남궁근, 2010).

양오석(2003)은 국가 간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방법을 그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보편적인 개념화가 인정되는 추상성의 고(高)수준의 범주, 일반적인 개념화가 인정되는 중(中)범위수준의 범주, 형상적인 개념화가 인정되는 저(低)수준의 범주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고수준 범주는 이질적인 맥락들 간의 교차지역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를 일컫고, 예로 아시아권 국가와 영미권 국가를 특정 주제를 가지고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 중범위수준의 범주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맥락들 간의 지역 내(內) 비교분석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영미권 국가들을 특정 틀 안에서 분석 하고자하는 연구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저수준 범주에서는 국가별 수준에서의 연구가 적절하며, 특정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치제도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범위수준의 범주에서의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한국의 스포츠산업정책

1.1 정부전략

(1)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고령화 사회와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로 가족 단위의 캠핑이나 아웃도어 등의 레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본 계획은 스포츠산업과 주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미래성장의 동력을 창출해낸다는 비전을 갖고 2013년 기준으로 37조원이었던 스포츠시장 규모를 2018년에는 53조원으로 확대하고 스포츠산업 일자리 또한 2013년 기준으로 23만명이었던 수준에서, 2018년에는 27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덟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개방형 스포츠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IT가 결합된 정보 서비스, 기기 개발 등의 신(新)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상스포츠 종목 중 유망한 10가지를 선정하여 스포츠 시뮬레이터의 기술 개발과 지원을 통해 스포츠 IT 기술벤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

역에 특화된 복합스포츠 상품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스포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보스턴마라톤, 뉴욕마라톤과 같이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인 명품 스포츠이벤트를 발굴하여 관광 자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네 번째는 스포츠용품, 시설,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수요를 촉진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컨슈머리포트의 발간을 통한 스포츠용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 시설 맵을 구축하여 전국에 위치한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는 아마추어 및 비인기 스포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경기 중계사이트를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개설하여 잠재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 전략에는 프로스포츠구단이 경기장을 장기적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프로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승부조작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스포츠 관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여섯 번째는 스포츠 관련 금융 및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조달을 다원화하려 하였다.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다양한 종목의 유망주를 발굴 및 육성하는데 지원을 하고 스포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시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b).

(2) 스포츠산업 육성 중점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 초에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2014년 40조 8,000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를 43조 2,000

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 있는 프로스포츠 육성,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확대,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의 지원체계를 강력하게 확립하는 5대 정책방향을 세웠다. 스포츠 분야의 유망한 기업이나 창업자,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에 투자를 하는 대규모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여 원활한 스포츠산업 투자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포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한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프로구단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프로구단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포츠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대리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성과 양구에 각각 컬링과 펜싱 스포츠시설이 마련되고 관련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지역을 스포츠도시로 육성하여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스포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에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b).

1.2 법률

우리나라의 스포츠관련법 중 스포츠산업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거나 내포하고 있는 법률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평가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당시에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용품의 생산 장려와 체육시설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확보해야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되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2007). 본 법안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서비스와 재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새로이 창출하는 스포츠산업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제정 초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큰 골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세부 항목에 대한 규약을 정해 놓았다. 세부 조항에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8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연구소·대학 및 그 외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제9조) 조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제15조)에 관한 조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외국자본 투자유치, 수출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하여 국내 스포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스포츠의 육성(제16조) 조항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여가활동을 독려하

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한 필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항들을 바탕으로 스포츠산업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음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2007). 이후, 2008년과 2010년, 그리고 2016년까지 세 차례의 개정이 진행되어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존재하게 되었다(구수용·윤양진, 2014).

2008년에는 문화관광부가 국정홍보처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하여 기획재정부가 신설되는 등의 정부기관 재배치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큰 틀과 내용은 변함이 없되 용어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 있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2008).

2010년에는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제7조) 조항을 삭제하고 프로스포츠의 육성(제16조) 조항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못하는 실정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관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수·보수를 실시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사용과 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스포츠단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최대 25년 내에서 사용하고 수익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2010).

2016년에 법안이 전부개정되었는데, 이는 스포츠산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본 법안이 실제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실태조사(제7조) 조항을 새로 추가하여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

였다.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8년에 개정되었던 프로스포츠의 육성(제17조)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포츠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체에 2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는 프로스포츠단과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스포츠산업 진흥법, 2016).

(2)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 진흥을 통해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 풍요로운 생활 영위와 더불어서 체육을 통해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에 최초로 제정이 되었다.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총 39번의 개정과정을 거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정 초기에는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로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제7조) 조항을 내세워 국민을 대상으로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고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매년 설정하여 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지방체육진흥(제8조)을 통해 각 체육단체의 체육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였고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제9조)를 통해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도자 양성(제10조), 시설의 정비(제11조) 조항을 통해서 국민체육진흥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종합경기장의 설치(제12조) 조

항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립종합경기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시설의 이용(제13조) 조항을 통해 각 학교와 직장에 존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민체육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제15조),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제16조) 조항을 도입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 1962).

최초 제정 후 약 3년 뒤인 1965년 6월에 첫 법안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존 조항이었던 선수의 보호(제14조)를 선수의 보호 및 육성(제14조)으로 개칭하고 선수와 지도자에게 필요한 보호 뿐만 아니라 육성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장려금제도와 표창제도를 도입하고 선수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해주도록 하였다. 기존에 법안에는 없었던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및 면제조치(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용품의 생산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용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제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제16조) 조항에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보조 및 면세(제16조의2)와 벌칙(제16조의3) 조항을 추가하여 민간체육시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면제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학교 및 직장체육진흥(제9조제2항)과 선수의 보호 및 육성(제14조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학교나 직장의 장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 1965).

1971년 1월에 3차 개정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던 기존의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체육의 진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체육심의회(제5조) 조항을 삭제하여 문화교육부에만 두도록 한 체육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하

였다. 지방체육진흥(제8조)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의 체육대회를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거나 직접 개최하여야 하고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제9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에서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창설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도록 하였다. 선수의 보호 및 육성(제14조제5항) 조항을 신설하여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가 은퇴한 때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체육용품의 생산 및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용품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치를 명시했던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및 면세조치(제14조의2제2항) 조항을 삭제하였다.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제16조) 조항을 체육단체의 보조와 체육진흥기금(제16조)으로 개칭하고 동조에 제2항,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신설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국가가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법인을 통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과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법인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혹은 공공시설 및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 1971).

1982년 3월에는 4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1986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국제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할 체육부를 신설한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러 조항에서 칭한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변경한 것이지만 문교부 기능중에서 체육에 관한 역할을 체육부로 이관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체육사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국민체육진흥법, 1982a).

1982년 12월에는 본 법안의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와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과 관련된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였

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고 은퇴할 시에 지급하던 생활비 보조금을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기타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해당 선수의 경기지도자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육의 과학화를 추진하면서 연구기관에 연구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1989년 3월 8차 개정에서는 기존의 국민체육진흥재단의 명칭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체육복표의 발행(제19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금 조성을 위해 체육복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 1982b).

1990년 12월에는 2000년대에 국정수행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행정기관의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하고 청소년 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개정이 되었던 1993년에는 생활체육의 육성을 통해 국민여가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한 문화체육부를 신설하였다. 이에 부처 상호간의 기능 불균형과 중첩현상을 없애고 정부의 능률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993년에는 지방화시대에 맞춰 직장체육진흥에 관련된 업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나날이 높아져가는 국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 여가체육활동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시도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서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두도록 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는 소속 종업원의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를 두도록 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 1990).

1999년 8월에는 16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제3장의2) 조항을 신설하여 2002 한일 월드컵대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월드컵 개최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축구보급 및 활성화,

축구 유소년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한국 축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공익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4년 19차 개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지나친 사행성으로 인해 무질서하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당첨금과 등수별 배분되는 당첨금의 비율, 그리고 1회 구매가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2005년 7월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을 담당해서 지원하고 육성할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같은 해인 2005년 11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다(국민체육진흥법, 1999).

2007년 4월에 22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하고 법적 간결성과 함축성을 유지하되 법 문장의 한글화 표기를 통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밀접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2012년 2월에 이루어진 27차 개정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양성(제11조제2항) 조항을 수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한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장애인, 유소년, 노인 등 각 대상별로 더욱 전문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 2007).

2014년 1월에 이루어진 30차 개정에서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제14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대표선수나 국가대표선수 지도자가 국제대회 경기나 훈련, 지도 중에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대표 선수보상 심사위원회를 두어 앞서 언급한 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과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수 등의 금지행위(제14조의3) 조항을 신

설하여 전문체육 경기의 선수, 코치, 감독, 심판과 경기단체 임직원은 경기에 관한 부정청탁과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 2014a).

2014년 5월에 이루어진 33차 개정에서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16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을 인증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2015년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켜 선진형 체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 2014b).

(3)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3월에 제정된 법안이다. 체육지도자의 배치(제15조), 체육지도자 교육(제16조) 조항을 두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해당 체육지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89). 총 32번의 개정이 이루어진 본 법안은 1994년 3차 개정에서 본 법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확충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 법안에 나타난 규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다. 또한, 총칙(제1장), 공공체육시설(제2장), 체육시설업(제3장), 보칙(제

4장)으로 항목을 나누어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하였고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94).

공공체육시설(제2장)은 전문체육시설(제5조), 생활체육시설(제6조), 직장체육시설(제7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제8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제9조)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체육시설(제5조) 조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와 선수들의 훈련 등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제6조), 직장체육시설(제7조) 조항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직장인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제3장)에서는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제10조) 조항을 만들어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을 시설규모와 운영형태 등에 따라서 세부종류로 분류하였다. 회원모집(제19조), 회원의 보호(제20조) 조항을 통해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등의 등록체육시설업이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원모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이 회원자격의 양도, 입회금의 반환, 회원증 발급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지키도록 하였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94).

6차 개정안에서는 신고대상인 체육시설업 일부를 자유업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운영(제24조), 체육시설의 이용료(제25조)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각종 체육시설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제도상에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였다. 2005년에 이루어진 12차 개정안에서는 생활체육시설(제6조제2항) 조항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체육시설업의

사무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시, 군, 구 사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제고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99).

2015년에 있었던 28차 개정에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제4조의3),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제4조의4),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제4조의 5)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제4조의2) 조항에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장기 정책,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사항,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5).

1.3 예산

2017년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조 원(3.7%)이 증가한 400조 7천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편성된 2017년 예산 총액은 5조 6,971억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2,023억 원(3.7%)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 중 체육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1조 5,021억 원(26.4%)으로 2016년 본 예산 대비 365억 원(2.4%)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설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와 관련된 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보고하고 있다. 결국, 2017년 우리나라 체육 분야의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0.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도에 체육 분야가 국가 예산의 0.39%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c).

2016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7년도 예산·기금운용 계획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2016년의 1억 9000만원에서 7000만원 감소한 1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스포츠산업 관련 항목은 스포츠산업기술기반 조성(R&D), 스포츠과학 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스포츠산업 융자 등이 있으며 총 예산 약 710억 원을 책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b).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스포츠산업 육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스포츠산업 포럼과 컨퍼런스, 관련산업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등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기관을 이전한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사업과 스포츠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은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육성하기 위한 국내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대상의 인증사업이며 국내 스포츠용품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박람회, 해외전시 등을 개최하고 컨설팅 혹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스포츠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포츠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에는 지방체육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등의 세부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가체육공간을 조성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시설과

국내·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체육시설 164개소, 생활체육공원 27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11개소, 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80개소, 레저스포츠시설 5개소 등 총 287개소를 신설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6b).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는 각종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산업기술기반 조성(R&D)사업, 스포츠산업용자사업, 체육용구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등이 있다. 스포츠산업기술기반 조성(R&D)사업은 스포츠에 기술력을 접목시킨 고부가 용품의 개발과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및 경기 장비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조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약 140억 원이 배정된 본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경쟁력 강화 조치·지원 등(제6조),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진흥시책의 권장(제3조),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제6조) 조항을 법령상 근거삼아 추진되었고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중 하나였던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육성 전략’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이 되었으며 이후, 스포츠산업 비전 2010(2005년 7월),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2008년 12월) 등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으며, 2013년에 대통령이 스포츠와 과학기술이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것을 지시하고 같은 해에 수립한 2차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에도 스포츠산업 활성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2016년 기준, 스포츠용품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약 23억 원, 스포츠서비스 기술개발에 약 15억 원, 스포츠융복합 기술개발에 약 51억 원, R&D 거점육

성에 약 44억 원의 규모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산업용 자사업은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민간체육시설, 그리고 스포츠서비스업체가 생활체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각종 검토 및 심의 단계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선정이 되면 개별 기업 당 1억 원에서 85억 원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에는 2016년 기준으로 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제17조제2항 내지 제3항) 조항을 법령상 근거로 하고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해 199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체육시설 설치업체 대상으로는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4년 10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서비스업체에 대한 용자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용자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사업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사업효과는 용자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을 통해 성과달성도를 환산하는데 2014년에는 4.5% 목표에 27%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5년에는 4.6% 목표에 7.2%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도에는 2014년 실적치 대비 3%의 상향된 수치인 28%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기대치를 대폭 상승시켜놓은 상태이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마지막으로 체육용구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를 전략으로 한 스포츠용품의 개발과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한 지원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포츠브랜드로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 참여와 관람을 촉진시켜 스포츠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것이 곧 스포츠산업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 촉진,

스포츠용품의 품질개선 유도 등으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스포츠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더불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이끌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스포츠와 관광, IT, 의료 및 기타 분야가 융합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령상 근거로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경쟁력강화 조치·지원 등(제6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8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4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제15조) 등의 조항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약 343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스포츠산업 강소형기업 육성에 약 29억 원, 스포츠산업기반조성에 약 48억 원,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에 약 45억 원, 스포츠산업 펀드조성에 약 200억 원, 스포츠도시 육성에 약 20억 원을 책정하였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위에서 언급한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에 대해 배정된 예산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보고하는 “체육예산(기금)현황”의 2017년도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표 5. 한국 체육 분야 예산 중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한 배분을(단위: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체육예산	1,074,382		1,046,300		1,354,000		1,538,600		1,502,100	
스포츠산업예산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122,781	11.4	160,606	15.3	193,817	14.3	234,701	15.3	78,136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1,219	1.0	-	-	-	-	-	-	-	-
스포츠산업 해외진출지원	1,560	1.3	-	-	-	-	-	-	-	-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717	0.6	685	0.4	200	0.1	190	0.1	-	-
스포츠산업 일자리센터지원	-	-	300	0.2	-	-	-	-	-	-
지방체육시설 지원	90,906	74.0	90,521	56.4	91,034	47.0	82,816	35.3	-	-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	10,619	8.6	11,848	7.4	9,786	5.0	15,492	6.6
노인건강생활체육 시설 지원	1,820	1.5	1,765	1.1	1,160	0.6	4,081	1.7
운동장생활체육 시설 지원	-	-	36,304	22.6	27,615	14.2	27,480	11.7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	-	-	682	0.4	970	0.5	2,246	1.0
스포츠산업기술 기반조성(R&D)	7,700	6.3	8,700	5.4	13,000	6.7	14,071	6.0
스포츠산업 용자	8,240	6.7	7,334	4.6	18,000	9.3	54,000	23.0
체육용구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	-	2,467	1.5	32,052	16.5	34,325	14.6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4, 2015a, 2016b);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1.4 조직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차관 아래 1실(체육정책실) 2관(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 6과(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체제로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육정책실에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 장애인체육의 진흥,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위한 정책은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정책관에 속해 있으며 세 가지 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중장기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와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련된 법령을 운용·보완하고 체육시설업의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스포츠의 진흥과 활성화 계획 수립, 각종 종목의 주최단체 지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2008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수차례의 조직 차원의 통합과 부서 이전이 진행되었다. 1982년 3월에 체육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1948년에 출범한 문교부 소속의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행정을 관장했다. 체육부는 1991년 2월에 체육청소년부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담당업무는 체육진흥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여 1993년 3월에 문화체육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체육 외에도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98년에는 문화체육부가 폐지되고 문화관광부가 발족하였는데 문화관광부는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2008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어 제2차관 하의 체육정책실에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육정책실은 체육정책관과 체육협력관으로 나누어지고 또다시 각 세 개과로 분리되어 각종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체육정책관은 전문체육부터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의 진흥까지 체육 전반에 걸친 장·단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과 등이 부서가 존재하며 체육정책과에서는 체육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체육지표를 개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업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한 종목별 국내 경기대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체육 종목을 육성하고 직장과 지역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업무, 국민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지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생애주기별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스포츠산업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운용하고 체육시설업의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 프로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다.

1.5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에 이은 스포츠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 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려는 목표 아래 크게 네 가지로 스포츠산업의 방향성을 잡고 있다.

우선, 스포츠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복합산업을 창출함과 동시에 스포츠산업의 저변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춘천 마라톤과 같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 대표 스포츠이벤트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지역별로 특화된 종목의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여 스포츠시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을 선정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자연스럽게 스포츠 시설업과 용품업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약 1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약 22억 원으로 예산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 섬유, IT 등의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함께 스포츠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에 골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로, 캐디·카트 선택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골프를 즐기는데 있어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골프 대중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2015b).

다음으로는,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화와 관람 및 참여 스포츠의 환경개선이 스포츠산업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 참여자와 스포츠 관람자의 수요층 확대가 결국에는 스포츠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

는 것이다. 스포츠 참여자가 스포츠 용품과 스포츠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제공 받아, 효율적인 소비를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의 상승은 잠재고객을 유인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2013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스포슈머리포트”가 대표적인 예이며 2016년 11월까지 총 12호의 웹진이 발간되어 다양한 종목과 형태의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프로 2군리그(ex; K리그의 R리그) 혹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아마추어리그를 사업화하는 계획은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필리핀이 참가한 아시아 프로농구 챔피언십이 2015년 9월에 인천에서 개최가 되었으며,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스포츠 콘텐츠의 개선 측면에서는 관람 스포츠를 위한 시설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 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과 같은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고 수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의 창단에 출자하거나 구단의 사업 추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년간 찬반 논란이 있었던 스포츠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을 토대로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면 관람 스포츠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잠재적인 수요층을 표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지방체육시설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약 1,300억 원으로 2016년도 스포츠산업 예산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약 830억 원을 투자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에 힘쓰고 있으

며 스포츠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신설을 위한 투자와 함께 전국의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2015b).

스포츠산업 선진국,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산업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선진국의 기술이나 콘텐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시장에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스포츠시장에 접목시켜 내부적인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 한동안 스포츠와 IT의 융합을 도모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IT를 스포츠에 접목시킨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발굴해내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제8조와 제15조를 신설하면서 스포츠산업 관련 용품이나 시설의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개발과 스포츠용품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산업기술 기반조성(R&D)사업, 스포츠산업용자사업,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2016년 기준으로 약 1,02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산업 예산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로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IT를 전 세계에 선보임과 동시에, 스포츠와 IT가 융합한 스포츠산업의 성공과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IT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시킨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강한(2017.2.20)은 사물 인터넷(IoT), 근거리통신기술, GPS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스마트폰 실시간 위치를 추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시점부터 경기를 관람하고 출국할 때까지 AR 길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증강현실

(AR), 5G(5세대 이동통신), 사물 인터넷(IoT) 등을 이용한 IT 서비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구현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2015b).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강화하여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013년에 스포츠산업과가 부활하면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와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항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기관을 선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진행한 스포츠거점육성사업으로, 2016년에 스포츠 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대구테크노파크 내에 설립하고 스포츠산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창업 지원이나 ICT, 의료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www.scic.or.kr). 스포츠산업 확대를 위해 창업과 일자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기존에 있던 창업지원센터를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창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지원과 관련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세 곳이었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를 2017년 4월 공모를 통해 조선대학교, 국민대학교, 한남대학교 등을 추가적으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로 선정하여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2015b).

제 2 절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2.1 정부전략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11년 6월에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을 기반으로 스포츠를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사람들의 권리로 규정하고 스포츠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이 되는 것,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자국의 국제적 지위향상 등 다방면에서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의 이러한 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 학교, 스포츠관련 조직이 협동하고 연계하여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스포츠기본법」 제9조 조항을 바탕으로 스포츠의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문부과학성이 2012년 3월에 발표한 “스포츠기본계획”에는 「스포츠기본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향후, 일본 정부가 나아가야 할 스포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문부과학성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스포츠단체가 따라야 할 중요한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文部科學省, 2012).

(1) 제1기 스포츠기본계획

“스포츠기본계획”은 스포츠의 역할에 근거하여 지향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회상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타인과의 협동, 공정성과 규율을 중요시하는 사회. 둘째, 건강하고 활력에 찬 장수사회. 셋째, 지역 사람들의 주체적인 협동으로 깊은 유대관계로 맺어진 일체감 있고 활력 있는 사회. 넷째, 국민이 자국에 대한 자부

심을 갖고 경제적 발전과 함께 활력 있는 사회. 다섯째, 평화, 우호에 공헌하고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사회상을 바탕으로 ‘연령이나 성별,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각자의 관심과 적성에 맞게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과제로 하여, 아래의 과제와 같이 일곱 가지의 세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아이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마련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여, 학교나 지역 등에 있어서 모든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목표의 결과로, 향후 10년 이내에 아이들의 체력이 1985년 당시의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향후 5년동안 체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되며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생애주기에 맞는 스포츠 활동 추진이다. 생애주기에 맞는 스포츠 활동의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각자의 체력이나 나이, 기술, 취미, 목적에 맞게 언제, 어디서든, 언제까지든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애스포츠사회의 실현을 향한 환경의 조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성인의 주1회 이상의 스포츠 참여율이 2/3(약 65%), 주3회 이상의 스포츠 참여율이 1/3(약 3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스포츠를 즐기기 힘든 사람들이 있음에 유의하여 성인의 스포츠 미참여자(1년간 한 번도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자)의 수가 0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지역의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의 설립이나 스포츠지도자와 스포츠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넷째는 국제 경기력의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이나 스포츠 환경의 조성이다. 국제 경기력의 향상을 위해 주니어 때부터 국가대표 수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의 구축이나 스포츠 환경의 정비를 행한다. 그 결과로, 향후 동·하계 올림픽에서 최다

메달 수 획득, 각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다 입상자를 배출하는 것, 하계 올림픽에서는 5위, 동계올림픽에서는 10위 진입을 각각 목표로 하였다. 또한, 패럴림픽은 2008 베이징(하계), 2010 밴쿠버(2010)에서 기록한 17위와 8위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섯째는 올림픽·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의 유치·개최 등을 통한 국제 공헌과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 공헌과 교류의 추진을 위해 올림픽·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 국제적인 정보의 수집과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섯째로 스포츠계의 투명성과 공평·공정성의 향상을 내세웠다. 스포츠계의 투명성, 공평·공정성 향상을 목표로 경기단체 및 선수들에 대한 연수 진행, 주니어 층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도핑방지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스포츠분쟁의 중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계의 선순환 구조 창출이다. 엘리트스포츠의 신장과 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일환으로 엘리트스포츠와 지역스포츠의 연계 및 협동을 추진하였다(文部科學省, 2012).

(2) 제2기 스포츠기본계획

문부과학성은 2017년 3월, 2017년부터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2기 스포츠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제2기 계획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이념을 ‘스포츠의 가치’로 구체화하여 좀 더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인 스포츠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스포츠의 ‘즐거움’과 ‘행복’이야말로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스포츠의 힘으로 긍정적인 활력소가 넘치는 사회와 유대관계가 강한 세상을 만

드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향후 5년간 효과적으로 제2기 계획을 예정대로 이행하기 위해 네 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는 생애주기에 맞는 스포츠 활동의 추진과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성인의 스포츠 참여율을 주 1회 이상이 65%(장애인 40%), 주 3회 이상이 30%(장애인 20%)를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성인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학교체육의 지도요령 개정, 전국적인 체력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육수업의 개선을 꾀하고 운동부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체육을 통해 아이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증진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직장인과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율의 향상과 여태까지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하였다(文部科學省, 2017a). 스포츠기본계획 제1기와 제2기에서 수립한 목표를 아래 표와 같이 비교 정리하였다.

표 6. 스포츠기본계획 제1기와 제2기 목표의 비교

제1기 계획		제2기 계획
스포츠 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주1회 이상 스포츠참여율 65%, 주3회 이상 스포츠참여율 30% 달성 · 성인 스포츠 미참여율 0% 접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주1회 이상 스포츠참여율 65%(장애인 40%), 주3회 이상 30%(장애인 20%) 달성. - 현황: 주1회 40.4%, 주3회 19.6%(장애인 19.2%, 9.3%) · 미참여율 0% 접근 목표 - 현황: 22.6%
체력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0년 이내로 청소년 체력을 ‘85년대 수준으로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청소년 비율을 80%(현재 60%)로 증가, 스포츠를 싫어하는 청소년 비율 감소(현재 15.5%→8%)를 목표
종합형 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구촌에 최소 1개의 종합형클럽 설치. 지역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형 클럽의 등록제도 수립 · 중앙지원조직 설치(47도도부현)

	거점클럽을 전국 300개소 설치할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CA모델로 운영개선 클럽 증가 (현재 37.9%→70%) · 종합형클럽 통한 지역문제 해결방안 마련(현재 18.4%→25%)
메달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하계올림픽대회 역대 최다 메달 획득 ·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역대 최다 입상자 수 실현 · 하계:5위, 동계:10위 이상을 목표 · 패럴림픽은 직전대회 기록 이상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패럴림픽대회에서 역대 최다 금메달 획득을 목표 1964동경: 16개, 1998나가노: 5개 2004아테네(패): 17개, 1998나가노(패): 12개
대학 스포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스포츠 행정가 배출학교 수: 30개
장애인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이상 스포츠참여율을 40%(청소년: 50%) 달성을 목표 (현재: 19.2%(청소년 31.5%)) · 종합형클럽에 장애인 참가 추진 (현재: 40%→50%) ·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육성 (현재 2.2만명→3만명) · 장애인스포츠 직관 경험자 (현재 4.7%→20%)
스포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시장규모 55조 원에서 2020년: 100조 원/2025년: 150조 원으로 확대
스포츠 투어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참여/관람) 목적으로 일본 방문 외국인 수 250만명(현재 약 138만명)을 목표. 스포츠투어리즘 관련 소비액을 3조 8,000억 원(현재 2조 2,000억 원)으로, 지역 스포츠키미션 수 70개소(현재 38)로 확대
국제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올림픽위원회, 패럴림픽위원회, 국제경기단체 종사자 수 35명(현재 25명) 목표
스포츠단체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스포츠단체에 분쟁해결구조 확보 (현재 45%)

자료출처: 스포츠廳(2017)

(3) 스포츠미래개척회의

일본의 스포츠청은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2015년부터 “스포츠미래개척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3월, 7차 회의를 진행하기까지 일본 스포츠산업 활성화(1차), 스포츠조직경영과 인재양성(2차), 경기장(3차), 스포츠·기술융합(4차), 스포츠와 지역, 인재, 건강(5차) 등의 주제를 다루며 스포츠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6차 회의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통해 GDP 6000조 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스포츠산업을 일본의 중심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산업을 구심점으로 주변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이는 GDP 6000조 원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2002년에 약 70조 원이었던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소비자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공약실패로 인해 2012년 기준으로 약 55조 원으로 감소하면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2025년, 단계별로 스포츠시장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9년에 일본 12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럭비월드컵, 2020년에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회 하계올림픽, 2021년에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에서 개최되는 월드마스터지대회 등 각종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이 일본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スポーツ廳, 經濟産業省, 2016).

표 7. 일본 스포츠시장 규모 확대 계획(단위: 조 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주요 정책		현재	2020년	2025년
(주요 정책분야)	(주요 요인)	55조 원	109조 원	152조 원
경기장	→ 경기장 중심으로 도시 형성	21	30	38
아마추어 스포츠	→ 대학 스포츠 등	-	1	3
프로스포츠	→ 수익 확대	3	7	11
주변산업	→ 스포츠 투어리즘 등	14	37	49
IoT활용	→ 시설, 서비스의 IT화	-	5	11
스포츠용품	→ 스포츠 참여율 향상	17	29	39

자료출처: スポーツ廳、經濟産業省(2016)

스포츠청은 크게 여섯가지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2020년에 109조 원, 2025년에는 152조 원으로 스포츠산업의 시장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경기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스포츠의 참여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스포츠 관람인구를 늘려야한다는 관점에서 경기장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다음은 아마추어 스포츠를 상업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는 고시엔, 대학마라톤 등 전국적으로 인기있는 스포츠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을하면 이벤트를 통한 이익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NCAA가 미국 4대 스포츠시장의 30%정도 규모인 것에서 착안하여 일본도 대학스포츠를 활성화시켜서 프로스포츠의 30%정도 규모의 대학스포츠 시장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프로스포츠의 흥행수익 확대이다. 지역스포츠를 관전하는 문화가 퍼져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스

스포츠 관람 관련 연간지출비용에서 2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스포츠 관람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또한, 기업간의 네트워킹 활동에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법인사업자나 VIP 고객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여 “Corporate, Sports, Hospitality“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넷째는 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주변산업과의 연계·융합이다. 현재 문부과학성은 일본으로 유입하는 외국인 여행객을 2020년에는 4천만명, 2030년에는 6천만명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중, 스포츠 관람, 스키 혹은 골프 여행 등 스포츠 투어리즘의 비율이 관람시장 전체의 10%정도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와 지역 특색을 연계하여 선보일 수 있는 사업구상이 동시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ot의 활용과 스포츠용품시장 확대를 위한 스포츠참여율 증대이다. IT기술과 스포츠와의 융복합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는’, ‘하는’, ‘데이터 분석’의 세가지 관점에서 IT기술을 접목시켜 스포츠를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다시점(多視點)로봇카메라를 이용한 입체적 영상표현기술개발(NHK), 고도의 현장감을 실시간으로 원격발신할 수 있는 “Kirari!”(NTT 통신사), 선수의 성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조성(SONY), 펜싱에서 사용하는 검 끝의 움직임을 가시화하여 엔터테인먼트화(Dentsu)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관전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관람 스포츠 외에 참여 스포츠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Cybathlon을 통한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선수가 경기 중에서 경험하는 충격이나 소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간접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 SMASH(Synchronization Media of Athletes and Spectator through Haptic)기술의 개발 등이 직접 하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줄 것으로 보인다(スポーツ廳, 經濟産業省, 2016).

2.2 법률

(1) 스포츠진흥법

일본 체육정책의 시초는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본 스포츠진흥의 기본을 다지기 위한 법령으로써 1961년에 제정된 「스포츠진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일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스포츠振興法, 1961). 이에 더불어서 194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1조에서 ‘심신과 함께 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1949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 2조에서는 ‘체육 혹은 레크레이션 활동’이 사회교육에 포함될 것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법률에 있어서의 스포츠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이었으므로 ‘보건체육위원회’는 1953년, 정부가 체육·레크레이션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였다. 「스포츠진흥법」에서 명시하기로는 스포츠가 국민 곁에서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밝고 풍요로운 국민들의 생활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진흥법」의 내용을 나열하자면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국민의 심신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그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전부 4장,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에 있어서의 스포츠는 ‘운동경기 및 신체활동에 대한 것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6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도경제성장’에 의한 노동력 강화와 심각한 공해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한편,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는 점차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를 배경으로 1972년에는 문부대신의 자문기관인 보건체육심의

회가 “체육 · 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책”을 제시하였다. 서양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15년 후, 국민의 스포츠참가 추이를 예상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1973년의 오일쇼크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1973년도는 ‘복지원년(福祉元年)’²⁾으로 내수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스포츠시설 증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스포츠도시 선언’ 등을 내세우면서 지자체가 스포츠 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 중반이었다.

1970년대는 스포츠권(權)에 대한 사상이 발전한 시기(時期)이기도 했다. 이미 스포츠 진흥법에 의해서 스포츠 참여는 국민의 자유권으로써 당연시 되던 때였으나 이 시기에는 이러한 자유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회권(社會權)이 발전하였다. 70년대 후반에는 유럽 평의회 “모두를 위한 스포츠헌장(European Sport for All Charter)”이나 유네스코의 “체육 · 스포츠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등이 소개되어 스포츠권은 일본 내에서 상당히 일반화되었다.

「스포츠진흥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이 법안에 대한 사소한 개정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기본적인 틀과 방향성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스포츠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 이를테면 스포츠활동의 발전, 스포츠인구의 증가, 아마추어와 프로스포츠간의 관계변화, 국제화의 진전, 도핑 또는 스포츠 분쟁 등 새로운 과제들이 발생, 그리고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나 지역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진흥법」은

2)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제 1차 베이비붐, 제 2차 베이비붐(1973)을 겪지만 그 해 가을에 오일쇼크가 발발하여 고도경제성장이 자연스레 끝나고 불황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다나카 카쿠에이(田中角榮)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의료비를 무료로 하는 등을 포함한 의료보험의 지급률 개선, 연금수급 상승, 생활보호기준 상승 등, 사회보건분야의 제도 개선이 진행된 시기.

‘영리를 위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고있지 않는 등 스포츠진흥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생겼다. 또한, 지역 스포츠클럽의 육성, 도핑방지활동의 지원, 선수육성 등에 있어서는 「스포츠진흥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스포츠에 관여하는 자들을 위한 권리나 이익의 보호 등에 대한 접근과 스포츠에 관한 중재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스포츠진흥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발전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진흥법」에 이어서 「스포츠기본법」의 움직임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문부과학성 부대신이었던 엔도 토시아키(遠藤利明)가 ‘스포츠진흥에 관한 간담회’에서 엘리트스포츠 육성과 함께 새로운 스포츠진흥법의 제정, 스포츠청의 설립, 스포츠예산을 문화청(文化廳)과 동일한 1,000억 엔으로 책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이 발표된 배경에는 2006년에 개최된 토리노올림픽에서 일본선수가 금메달 한 개를 획득하는 데 그쳐 나가노올림픽 이래로 동계종목에서 새로운 선수가 육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스포츠진흥에 관한 간담회에서의 제언이나 같은 시기에 동경이 추진하고 있었던 2016 동경올림픽개최활동이 계기가 되어 2007년 11월, 스포츠의원연맹 산하에 ‘신(新)스포츠진흥법 제정 프로젝트팀’이 발족하게 되었다.

‘신(新)스포츠진흥법 제정 프로젝트팀’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단체로부터 조언을 얻고 평의회(Advisory board)를 열어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를 실시하였다. 2009년 4월, 평의회는 ‘진흥법 개정’보다 스포츠의 기본이념을 중요시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신(新)스포츠진흥법 제정’에서 ‘스포츠기본법 제정’으로 호

름이 바뀌게 되었다.

이후, 스포츠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스포츠입국전략’을 2010년 8월에 책정하였다. 본 전략은 ‘새로운 스포츠문화의 확립’을 목표로 스포츠를 ‘하는 사람’, ‘보는 사람’, ‘지지(육성)하는 사람’을 중시하고 연계·협동의 추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후 10년 동안 실시할 다섯 가지 중점전략, 정책목표, 그리고 중점적으로 실행할 시책이나 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 구상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전략의 수립을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지지하고 친숙함을 느낌으로써 스포츠가 지닌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 일본의 새로운 스포츠문화가 확립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탄생한 것이 2011년 6월에 공포된 「스포츠기본법」이다.

스포츠를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인 것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각자의 건강상태나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시기의 스포츠가 심신의 건전한 성장을 하는 기반이 되는 것 아래, 학교와 스포츠단체, 지역에 있어서 상호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의 모든 세대가 교류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기반을 형성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스포츠기본법의 기본이념이다. 스포츠산업에 관해서는 세부 시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 양성 즉, 스포츠의 지도자나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는 인재의 양성과 지도자 자질의 향상, 또 양성된 지도자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시책이 있으며 스포츠시설의 정비, 이는 국민이 근처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시설의 정비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스포츠시설 운영의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스포츠단체와 스포츠산업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이며 산업계와의 연결이 위에서 언급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도록 추진하였다.

표 8. 스포츠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 신구대조표

스포츠진흥법(1961)		스포츠기본법(2011)	
제2장	제4조 (계획의 책정) 문부과학대신은 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함.	제9조 (스포츠기본계획) 문부과학대신은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계획(스포츠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	
제3장 1절	제12조 (시설의 정비) 국가와 지방공동체는 체육관, 수영장 외 기타 스포츠시설이 정부령 기준에 준하도록 시설정비를 실시해야함.	제12조 (스포츠시설의 정비 등) 국가와 지방공동체는 국민이 스포츠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경기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스포츠시설의 정비, 이용자를 위한 시설 운용의 개선, 스포츠시설에 지도자 배치 외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해야함. 제12조 2 스포츠시설의 정비에 있어서 시설 이용의 상태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제3장 2절	제10조 (야외활동의 보급장려) 국가와 지방공동체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캠핑활동 등의 야외활동을 보급하기 위해 코스의 설정, 캠핑장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함.	제18조 (스포츠산업의 종사자와의 연계) 국가는 스포츠의 보급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산업 종사자와 연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함. 제24조 (야외활동 및 스포츠·레크레이션활동의 보급장려) 국가와 지방공동체는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활동인 하이킹, 사이클링, 캠핑 활동 등의 야외활동과 스포츠레크레이션활동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시설을 정비하고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함.	
제3장 3절	-	제30조 (스포츠추진회의) 정부는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추진회의를 열고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및 기타 관계부처와 상호연계하여야함.	

자료출처: 文部科學省(2011)

2.3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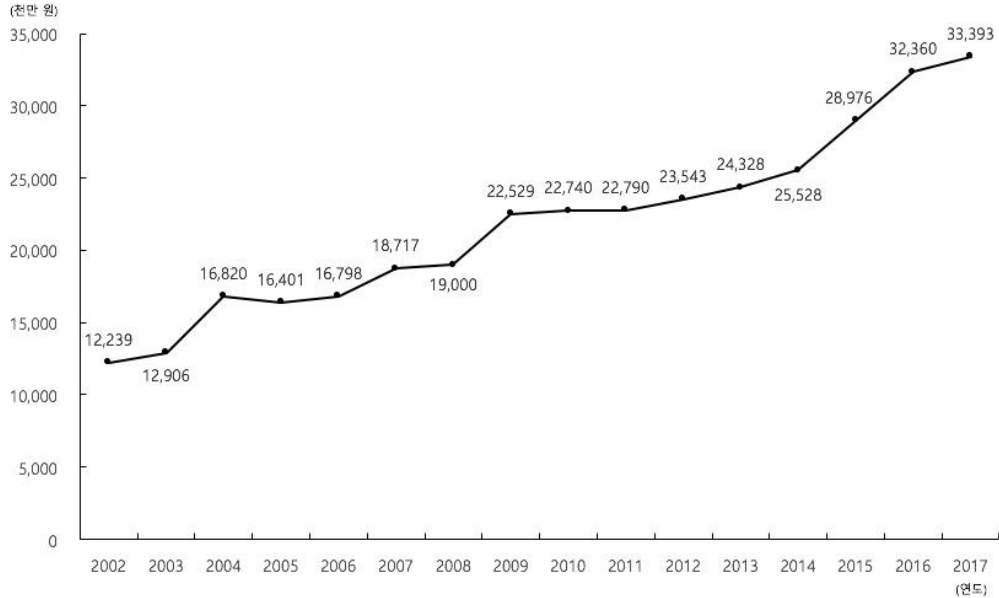


그림 7. 일본의 스포츠예산 추이

자료출처: 笹川スポーツ財団(2015); 文部科學省(2017b)

일본의 스포츠예산은 2007년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2002년 약 1224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5년 사이에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53조 970억 원이 총 예산으로 책정된 문부과학성의 0.6%인 약 3340억 원이 스포츠관련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총 예산이 53조 2156억 원이고 그 중 스포츠관련 예산이 약 3236억 원이었던 2016년과 비교하면 총 예산은 860억 원(0.2%)이 감소하였고 스포츠관련 예산은 약 110억 원정도가 감소하였다(笹川スポーツ財団, 2015; 文部科學省, 2017b).

문부과학성 혹은 스포츠청에서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들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스포츠예산 전체를 아우르는 각 사업의 세부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없으며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스포츠예산 보고서에도 ‘주요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만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스포츠산업 예산을 앞서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예산과 같이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사회체육시설의 내진화 사업은 각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시 대피소로 지정하고 활용하려는 사업이다(文部科學省, 2013). 스포츠환경 정비사업은 아이들이 스포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고 생애단계에 걸쳐 스포츠활동을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시설의 정비를 추진하여 스포츠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15). 스포츠 신사업개척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은 2016년도에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스포츠 분야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스포츠시장의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이 스포츠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외의 스포츠시장이나 스포츠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신사업개척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文部科學省, 2016b). 산업계와의 연계 검토 회의는 스포츠산업과 다른 분야의 연계를 통해 스포츠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하여 자생력 있는 스포츠산업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文部科學省, 2016b). 스포츠산업의 성장추진사업은 2017년도에 새로 계획된 사업이며 경기장의 개혁을 추진하고 스포츠경영인재를 육성, 스포츠관련 신사업창출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다(文部科學省, 2017b). 스포츠산업 인프라인 경기장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연합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기능형·복합형 시설의 선진사례를 도입하여 수익성 높은 경기장을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스포츠단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영인재를 육성하고 스포츠비즈니스와 관련된 컨퍼런스의 개최, 시장동향조사 등을 통해서 스포츠경영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포츠단체의 경영개혁을 바라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한 사업이나 지역 프로스포츠팀을 활용한 새로운 스포츠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기단

체 등이 연계하여 시장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주변산업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17b). 일본식 NCAA창설사업은 대학총괄조직의 구체적 설립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산(産)학(學)관(官)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학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선진화 모델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이다(文部科學省, 2017b). 스포츠 참여인구 확대 민(民)관(官)연합 프로젝트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운동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民)관(官)이 연합하여 스포츠 참여인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文部科學省, 2017b). 스포츠 투어리즘 창출사업은 스포츠청이 스포츠와 여행동향, 소비 트렌드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스포츠 투어리즘 관련업계의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한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이는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활성화와 더불어서 관련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文部科學省, 2017b). 마지막으로 Special Project 2020은 전국의 특수학교에서 스포츠·문화·교육활동이 결합한 전국적인 축제를 개최하여 장애인 스포츠의 거점 창출사업이다. 이는 2020 동경올림픽의 레거시(legacy)의 하나로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을 뛰어넘는 공생사회를 형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17b).

2.4 조직

일본의 스포츠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조직은 스포츠청이다. 스포츠청은 「스포츠기본법」을 기반으로 문부과학성의 야심찬 ‘제1기 스포츠기본계획’의 이념 실현을 위해, 그리고 스포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에 문부과학성의 관할 조직으로 창설되었다(文部科學省, 2016a). 일본에서는 2020 동경올림픽·패럴림픽이나

2019 럭비월드컵을 앞두고 일본의 스포츠진흥의 기회를 극대화되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 등 스포츠를 통한 사회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였으며, 문부과학성 산하의 조직으로써 2015년 10월 1일에 발족하였다(文部科學省, 2016a).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이 생애에 있어서 심신과 함께 건강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큰 목표로 하여 수명연장과 의료비 감면, 지역사회의 활성화, 국제교류와 협력,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지향하고 있다(スポーツ基本法, 1961). 특히, 스포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경산성(經産省)³⁾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산하에서 스포츠를 담당했던 스포츠·청소년국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업무 외에 청소년 교육 등 스포츠와 관련 없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고 스포츠 담당 부서가 스포츠·청소년기획과, 스포츠진흥과, 경기스포츠과의 3과에 불과하였던 반면, 현재의 스포츠청에서는 정책과, 건강스포츠과, 경기스포츠과, 국제과, 올림픽·패럴림픽과의 5과로 증편되고 정원도 기존의 76명에서 121명으로 증가하여, 예산 배정이나 인력 수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또한 스포츠청에서는 5과 외에 지역진흥과 민간스포츠를 담당하는 2명의 사무관을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文部科學省, 2016a).

스포츠청에서는 스포츠를 목적으로 한 스포츠투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 등의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다수의 인원이 관람할 수 있는 대규모 대회의 개최 등 각 지역에서 스포츠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스포츠단체, 기업이 하나가 되어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조직인 ‘지역스포츠 커미션’을 지원하여 직간접적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3) 우리나라의 산업통산자원부

있다(文部科學省, 2016a).

2.5 추진방향

일본은 2016년 2월에 “제1회 스포츠미래개척회의”를 개최한 후, 다양한 주제를 놓고 총 6회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17년 3월에는 스포츠청이 “제2기 스포츠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의 목표를 세우면서 일본 스포츠산업이 나아가고자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일본 스포츠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경기장의 개혁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만한 매력적인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대부분을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료수입에 의존했던 기존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의 다원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경기장을 다기능 복합형 스포츠시설인 스마트 베뉴(Smart Venue)로 만들어 경기장을 중심으로 도시의 발전을 추진한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청에서는 스포츠산업 성장추진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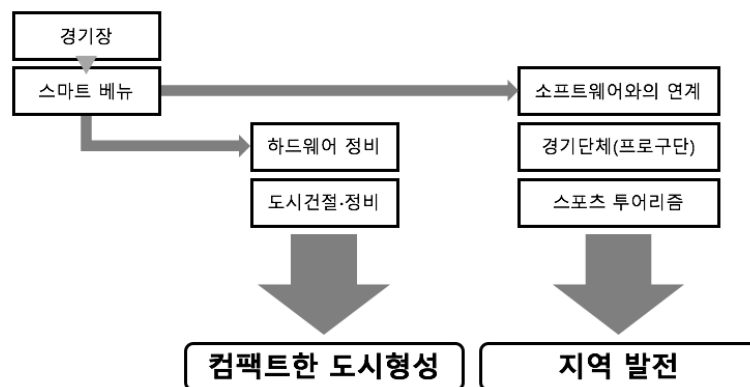


그림 8. 컴팩트한 도시형성과 지역 발전 계획

자료출처: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2016)

다음은 스포츠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내는 방침을 세웠다. 아마추어 스포츠대회를 사업화하여 학생스포츠를 통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문부과학성이 미국의 NCAA의 대학 간의 경쟁주의 형성, 통합 브랜딩(Branding), 프로와 아마추어의 공생전략 등을 통한 수익을 다시 스포츠와 교육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모범사례로 보고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가 의수, 의족, 휠체어 등의 개발로 이리저리 스포츠산업 시장에서 역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하였다. 2011년에 전문개정된 「스포츠기본법」의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스포츠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대학 내에 스포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대학스포츠 전문 경영인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의 수를 100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일본식 NCAA 창설사업, 스포츠산업 성장추진사업 등을 스포츠청이 약 23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세 번째는 스포츠 관련 단체의 조직경영과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서 프로스포츠리그,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이 연계하여 스포츠계 내외에 포진해 있는 다양한 인재를 대상으로한 전문 육성 시스템 혹은 인재와 기업간 매칭기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일본 프로축구리그인 J리그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고도의 비즈니스 능력을 필요로 하는 ‘Sport Executive’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J.League Human Capital(JHC)’을 시행하고 있다. JHC는 경영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인 ‘거시적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 ‘수치, 과학적 데이터의 활용’, ‘진취적인 실행능력’, ‘강한 정신력’, ‘인성’ 등을 터득할 수 있는 대학수업과 J리그에서 제공하는 각종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예비 경영인은 실제로 J리그 사무국이나 구단, 다른 스포츠 단체나 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성장추진사업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스포츠경영인재 플랫폼협의회(가칭)’를 발족하여 경영인재가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

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스포츠산업은 본래 서비스·정보산업, 시설·공간산업, 용품산업의 세 가지로 분류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범위를 넘어서서 스포츠와 건강, 식(食), 관광, 패션 분야 등과의 융합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와 IT의 융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각종 스포츠용품이나 시설에 IT를 접목시켜 스포츠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이용자가 보고,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도입으로 스포츠를 통한 건강사업의 확대와 더불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불거졌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기본법」 제9조를 통해 만들어진 ‘스포츠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스포츠를 통한 경제 및 지역 활성화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참여인구를 확대하여 스포츠산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학창시절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졸업 후, 사회에서는 직장생활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의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24조 등을 법적 근거로 삼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각자의 생활환경이나 특성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되는 20대나 직장 과 육아로 바빠지는 30대의 스포츠 참여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골프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스포츠시설업의 약 30%는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골프산업은 일본을 대표하는 스포츠산업 중 하나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1년간 일본에서 골프를 즐긴 인원은 총 920만명을 넘어섰으며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양

상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300개 이상의 골프사업장이 폐업하고 골프장 이용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생애스포츠사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골프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고 있던 사회체육시설 내진화 사업, 2016년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진행한 스포츠환경 정비사업, 2017년에 새로 도입한 스포츠 인구확대 민관연합 프로젝트, Special Project 2020 사업 등을 통해 스포츠 참여인구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제 3 절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정리

한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스포츠산업을 각 나라의 신(新)산업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연령별 국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스포츠산업에서도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변수인 정부전략, 법률, 예산, 조직을 바탕으로 파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우선, 양국의 정책에서 보이는 유사점 중 한 가지는 스포츠를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2012년 기준으로 약 55조 원인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를 2020년에는 109조 원, 2025년에는 152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전략을 내세운 바 있으며, 주변산업과의 융합한 신(新)산업 창출 정책이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와 해당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와 더불어서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콘텐츠를 개선하고 다양화하여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침도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발전방안이다. 프로스포츠 관람여건의 개선과 아마추어스포츠의 상업화 전략, 그리고 참여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정비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은 주변산업과의 융합 다음으로 스포츠참여율 제고와 동일선상으로 보는 스포츠용품 시장을 미래 스포츠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 참여율의 제고와 더불어서 스포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과 일본 모두가 골프산업의 육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며 골프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스포츠산업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한 때, 920만 명이 넘는

골프 참여자가 존재했던 2011년을 기억하며 다시금 골프산업의 활성화와 골프를 통해 일본이 수립한 ‘스포츠기본계획’의 골자인 생애스포츠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스포츠산업정책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한국은 스포츠산업 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이고 재원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스포츠산업용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스포츠산업기술 기반조성 등의 사업이 그것이다. 일본은 경기장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이 포함되어 도시기능이 집약된 도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맞춰 컴팩트한 도시의 형성을 건설하고자 한다. 컴팩트 도시의 형성은 주민의 편의, 경제효율성의 향상 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류공간의 창출과 커뮤니티의 형성을 꾀할 수 있다. 일본은 앞서 언급한 전략들을 통해 결국에는 ‘스포츠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애스포츠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전략이 사람들의 스포츠 참여를 불러 일으키고 스포츠산업의 확대로 이어지게 하는 그림을 거시적으로 그리고 있다.

표 9.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정리

	한 국	일 본
정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과 타분야의 융복합 스포츠콘텐츠의 개선 및 다양화 스포츠산업 기업육성 스포츠산업 선순환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 중심 도시건설 스포츠콘텐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인재 육성 타산업과의 융합 스포츠참여인구 확대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체육진흥법(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16조의2) 체육시설법(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제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제4조의3)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제4조의4)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제4조의5)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제4조의6) 스포츠산업 진흥법(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제7조) · 기술개발의 추진(제8조) · 창업 지원 등(제10조) ·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1조) · 품질 향상 지원(제15조) · 프로스포츠의 육성(제17조제2항, 제3항, 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진흥법(1961) 전문개정하여 스포츠기본법(2011)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기본계획(제9조) · 스포츠시설의 정비(제12조, 제12조의2) · 스포츠산업 종사자와의 연계(제18조) · 야외활동 및 스포츠·레크리에이션활동의 보급장려(제24조) · 스포츠추진회의(제30조)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시설 지원: 56.3% (2016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체육시설 지원 ·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 ·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 스포츠산업체 지원: 43.6% (2016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기술 기반조성(R&D) · 스포츠산업융자 · 체육용구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성장 추진사업: 1,300 백만 원 · 일본식 NCAA 창설 사업: 1,000 백만 원 · 스포츠인구확대 프로젝트: 900 백만 원 · 스포츠 투어리즘 창출 사업: 200 백만 원 · Special Project 2020: 755 백만 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관 소속 스포츠산업과 부활(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부과학성의 외국(外局)으로 스포츠청 설립(2015)

제 5 장 논의 및 제언

제 1 절 논의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최신 스포츠산업정책을 법률, 재정, 조직 비교한 연구이다.

학술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학술적 시사점은 학문적인 연구 자체가 적었던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가장 최근 정책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면 학계에 귀중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한국과 일본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스포츠산업정책을 파악하고 비교해봄으로써, 두 국가가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각 나라의 스포츠산업 중 어떤 분야가 향후에 발전하고 확대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이 수립한 정책 중에서 한국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은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현재 국내에서는 스포츠산업정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다른 국가와의 비교연구는 더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여 두 국가의 스포츠산업정책 간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고찰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사실, 연구자마다 각자의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같은 정책도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성적 연구의 경우, 특히 정책연구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념이나 생각이 어느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서, 다음에 제시할 몇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중립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려 노력하였으며, 본 연구가 실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이나 일본 스포츠산업정책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스포츠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배포하는 보고서와 자료집, 검증된 민간 기관에서 발간하는 스포츠산업 관련 보고서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부에서 배포하는 자료의 성격상 한정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경우, 연구자의 접근권한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일본 정부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지리적 특성상 연구자가 자료수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 자료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한국 자료보다 상대적으로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보다 풍부한 자료수집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를 실행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을 법률, 예산, 조직

과 함께 정부전략을 비교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변수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인을 찾아 분석하면 한층 더 깊게 두 나라의 정책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비교변수 혹은 그 이외의 변수를 비교한다면 더욱 발전된 정책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자료집을 위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나 관계자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문헌조사를 통한 자료수집보다 현장감 있고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통해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산업이라는 범위에 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스포츠 분야를 엘리트스포츠,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 스포츠산업 등으로 분류하지만 스포츠 내에 경계를 만들어 확실한 구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산업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모든 스포츠 분야로 대상을 넓혀 스포츠 관련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나라가 어떤 비전을 갖고 스포츠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다 뚜렷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서린(2012). 역대 정부 간 체육정책의 비교 분석.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강성일(2005).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고문수, 엄혁주(2014). 국내 유소년 생활체육 정책 현황 및 지원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3), 15-26.
- 구수용, 윤양진(2014).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17(4), 79-102.
- 국민체육진흥공단(2016). 2016년도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기금지원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 www.kspo.or.kr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146호(1962).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8호(1965).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297호(1971).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3540호(1982a).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3612호(1982b).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4268호(1990).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6013호(1999).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8344호(2007).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348호(2014a).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2690호(2014b).
- 권연택, 빙원철(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체육 정책의 전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0(4), 165-175.
- 기획재정부(2013).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2016).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김강한(2017. 2.20). 증강현실 길찾기·AI 통역... 평창은 'IT 올림픽'. 2017. 6.15. 검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0/2017022000045.html
- 김기범(2010). 5.16 군사정변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학교체육정책 비교.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대건(1995).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 비교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 131-142.
- 김대광(2004). 중등학교 체육정책의 발전방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3, 55-67.
- 김덕천(1999). 각국의 생활체육정책 비교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6, 57-68.
- 김동규, 김광재, 박종구(2012).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한 KBS의 조직구조 변화 연구. **방송 문화 연구**, 24(2), 71-101.
- 김승영(2004). 역대 정권별 체육 정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 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영성(2016).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중앙행정기관의 스포츠계획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19(3), 109-137.
- 김중희(2004).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및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3, 43-54.
- 김태룡(2016).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 : 관계와 재해석, 54(1), 1-29.
- 김한나(2009). 문민·국민·참여정부 체육정책의 특성 비교.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혁출(2009).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정책 방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 25-39.
- 김형익(2007). 군사정권과 문민정권의 학교체육정책 비교연구. 미간행 박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홍태, 최경호, 김유경(2008). 국민정부 체육정책의 실제와 평가.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 21-35.
- 남경희, 장유미(2013). 한·일 양국의 고령자일자리정책 비교연구. **일본근대학연구**, 39, 259-281.
- 남궁근(1999). 비교정책연구 : 방법, 이론, 적용. 서울: 법문사.
- 남궁근(2010). 행정조사방법론(4판). 과주: 법문사.
- 노진대(2004). 남북한 스포츠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박종권(2009). 역대 정부의 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 전두환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주한(2013). 박근혜정부 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2), 1-14.
- 보험연구원(2014).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성문정(2005).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체육재정 투자 방향. **스포츠과학**, 92, 2-6.
- 손석정(2016). 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향후 전망. **스포츠와 법**, 19(4), 69-89.
- 송명원(2015). 한국과 중국의 체육정책 법률 비교분석.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초당대학교 대학원.
- 신용호(2011). 국가 체육 정책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의 변천과정.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양오석(2003). 영국사회 연구를 위한 비교분석기법 :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사례선택의 문제. **영미연구**, 9, 187-209.
- 유소영(1988).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체육진흥정책의 비교 고찰. **建美**, (21), 29-44.
- 이옥훈, 주동진, 김동규(2001).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국가주의 스포츠정

- 책 성향 비교. **한국체육철학회지**, 9(2), 105-124.
- 이용식(1999a). 선진국의 생활체육정책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20(1), 179-200.
- 이용식(1999b). 선진국의 체육행정조직과 재정의 비교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2), 626-637.
- 이용식(2013a). 생활체육정책의 효과성평가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2), 15-28.
- 이용식(2013b). 전문체육정책의 효과성평가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1), 1-13.
- 이유준(1999). 한국체육 정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창길, 최청락(2012). 조직구조와 직무특성이 조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2), 65-88.
- 이현정(2003). 정부체육재원의 배분에 따른 체육정책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1), 477-487.
- 임우택(1998). 프랑스의 스포츠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과학연구지**, 16, 139-151.
- 전용구(1997). 한국사회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체육활동의 역할 변화에 관한 고찰. **체육사학회지**, 2(1), 12-22.
- 전용배, 김애량(2008). 각국의 스포츠산업 진흥관계 법률에 대한 고찰. **한국 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3(2), 119-128.
- 조규보(2013). 직선제이후 역대 대통령의 체육정책 비교연구. 미간행 박사 학위논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 조욱연(2012). 생활체육정책 유형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4), 457-467.

- 지식경제부(2012).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안)[2013~201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21호.
- 채광호(1990). 외국의 스포츠 행정 비교 연구 : 정책을 중심으로. **論文集**, 8, 481-504.
- 채재성(2009). 생활체육의 정책 진단과 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 119-130.
- 채재성, 김상겸, 홍선기(2015). 스포츠 기본법 정비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18(2), 11-48.
- 최문정, 구자영, 김범식(2013). 박근혜 정부 생활체육정책 발전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4, 467-482.
- 한국스포츠개발원(2016). 해외 스포츠정책 동향 분석: 체육행정 거버넌스 및 주요 이슈 관련 정책비교.
- 한국체육과학연구원(1998). 21세기 한국체육발전모델과 실현전략
-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년도 체육예산(기금)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13b).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도 체육예산(기금)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년도 체육예산(기금)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15b). 2015 스포츠산업 육성 중점 추진과제.
- 문화체육관광부(2016a). 2015 스포츠산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6b). 2016년도 체육예산(기금)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16c). 201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www.scic.or.kr
-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8333호(2007).
-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8852호(2008).
-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0002호(2010).
-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67호(201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4106호(198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19호(199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5636호(199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28호(2015).
- 통계청(2016). 2016 고령자 통계.
- Ragin, C.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olowitz, D., & Marsh, D. (2000). Learning from abroad: The role of policy transfer in contemporary policymaking. *Governance*, 13, 523.
- Child, J. (1972). Organizational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Sociology*, 6(1), 1-22.
- Lenz, R.T. (1980). Environment, strategy, organization structure and performance : patterns in one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 209-226.
- 厚生労働省(2016). 厚生労働白書.
- 笹川スポーツ財団(2015). わが國のスポーツ予算の検証～スポーツ予算とスポーツ基本計画～.
- スポーツ廳(2017). スポーツ基本計画第1期と第2期(案)の數値目標の比較.
- スポーツ廳、經濟産業省(2016). スポーツ未來改革會議中間報告～スポーツ産業ビジョンの策定に向けて～.
- スポーツ基本法、法律第78号(2011).
- スポーツ振興法、法律第141号(1961).
-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2016). スポーツ産業が日本を変える！～わが國スポーツ産業の可能性と課題～.

文部科學省(2011). スポーツ基本法新旧對照表.
文部科學省(2012). 第1期スポーツ基本計畫.
文部科學省(2013). 平成25年度予算(案)主要事項.
文部科學省(2015). 平成27年度予算(案)主要事項.
文部科學省(2016a). 平成27年度文部科學白書.
文部科學省(2016b). 平成28年度予算(案)主要事項.
文部科學省(2017a). 第2期スポーツ基本計畫.
文部科學省(2017b). 平成29年度予算(案)主要事項.

抄 録

韓国と日本のスポーツ産業政策比較研究

－ 法律、予算、組織を中心に －

Yoo, Dongb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本論文では、2013年から2017年までの5年間の韓国と日本のスポーツ産業政策で表れる類似点と相違点を分析する。全世界で約1,700兆ウォンを超える規模のスポーツ産業市場は継続的に成長している傾向にあり、特に政府はスポーツ産業を日本の新成長動力産業に指定して、積極的に産業活性化のための方策を出しているのが実情である。そこで、韓国と日本のスポーツ産業政策を比較する必要がある、分析の結果を使用して今後の韓国がスポーツ産業政策をどのような方向に推進していくか熟考する機会を提供するものと期待する。

本研究では、韓国と日本のスポーツ産業政策を調べるために、各国で発行する公文書、記事、レポートなどを収集して分析した。スポーツ産業政策

関連情報のうち、政府の戦略、法律、予算、組織を比較変数として選定し、研究を進めており比較分析した結果、次のような結論と示唆点を得た。

第一に、韓国と日本の両方のスポーツ産業、内的には、スポーツのコンテンツを改善し、多様化して競争力を強化しようとしており、外的には他分野との融合複合を通じた、新市場の創出を図っているという共通点を見つけた。第二に、韓国はエリート、生活、スポーツ産業がそれぞれ分離されてポリシーが策定されている傾向があるのに對し、日本は「スポーツ基本計画」という大きな枠組みの中で、すべてのポリシーが策定され、その中でスポーツ産業も同じ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重要な役割をしている。

本研究では、韓国と日本のスポーツ産業を比較するために、韓国での研究が不足しているポリシーの比較を試みたことに意義がある。韓国スポーツ産業の活性化と発展のために、本研究の比較結果に基づいて韓国の實情に合った政策を策定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キーワード：韓国、日本、スポーツ産業、政策、法律、予算、組織
學生番号：2015-23072